

●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-7호

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3차) 실시계획 승인 고시

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3차)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8월 20일

낙동강유역환경청장

1. 사업의 명칭 :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3차)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명 칭 : 한국수자원공사 사장
- 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- 준공 이후 43년이 경과한 울산공업용수도(1단계)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
- 개 요

구 분	사 업 내 요	비 고
수 원	낙동강 (대암댐, 선암댐)	
시설개요	▶ 노후관 개량: L=45.5km(D2,000 ~ 700mm) ▶ 대체관로: L=4.4km(D1,200 ~ 300mm)	

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
- 면 적 : 29,381 m<sup>2</sup>

5. 급수구역 : 울산광역시 및 국가산업단지 (울산미포공단, 온산공단 등)

6. 사업시행기간

- 2017년 ~ 2024년 (8년)

7. 수용·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붙임 참조

8. 공시송달

○ 주소 또는 거소불명,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의거 시, 군, 구(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)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.

- 협의기간 및 방법
-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
-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
-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#### 9.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

##### ○ 토지 관리처분 계획

-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
-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(환경부)에 무상귀속하되, 국·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
-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「국유재산법」 제29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
-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
-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
-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
-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,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.  
단,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
-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

##### ○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(관로 및 가압장 시설)

- 국(환경부)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

10. 기 타 :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(042-629-3233) 및 울산권지사(052-259-6266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붙임 수용·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